

제 504 호

1975.5.30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훈

편집 : 문화정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956 호 : 서울특별시가축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 3

◎ 규 칙

제 1474 호 : 서울특별시가축시장직제폐지규칙 3

◎ 고 시

제 80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3

제 81 호 : 비료판매영업등록 4

제 82 호 : 도시계획특정가구정비지구변경지적승인 5

◎ 공 고

제 124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
지정 및 취소공고 5

제 125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완료공고 6

1. 시.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27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7
제 130 호 :	암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공람공고	7
제 150 호 (도봉구공고) :	황사이전공고	8

◎ 예 규

제 293 호 :	서울특별시 가정외배식장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8
-----------	-----------------------------	---

◎ 사 령 15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가축시장설치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

1975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956 호

서울특별시가축시장
설치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605 호 (71. 6.28) 서울특별시 가축시장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립가축시장지체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

1975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규칙 제 1474 호

서울특별시가축시장지체 폐지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 914 호 (70.5.20) 서울특별시 가축시장 지체 폐지조례를 이에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80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61 호 (1974.5.14) 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정된 도시계획사업 (학교시설) 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허가 하엿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 4. 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과 서대문 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시행자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관계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6. 3
서울특별시 시장

가. 사업시행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서대문구 신촌동	산 9-1	임야	총 148,660 평중 2,202 평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131-17	임야	3,709 평중 420 평	연세대학교
	131-1	대	158 평	"
	131-2	"	136 평	"
계			2,916 평	"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학교시설사업
다. 사업시행지주소성명 : 서대문구 신촌동 134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천관
라. 사업시행면적 : 2,916 평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 : 1975. 5.
2) 준공 : 1975. 11. 30.
바. 위치도 및 계획명면도 : (별첨)
아. 공사실제도면 : 별첨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 제 81 호
비로판매영업등록
비로단속법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규정에 외거 다음과 같이 비로 판매영업등록사항을 고시한다.
1975. 6. 3
서울특별시 시장

등록번호	등록 또는 교부년월일	판매자 주소성명 및 판매장 소재지	비로의 명칭	보증성분량
1-5	등록 1975. 6. 3.	1.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138-35 박갑수 2. 판매장소 : 서울중로구종로 5가 193-4 중앙중도주식회사	제 5 종복합비로 (액체비로) (일명 - 캄프살)	농수산부고시 제 2518 호에 의한공정규격

1. 유효기간 : 1975.6.3-1978. 6.2
2. 조 건 :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타인에게 등록권을 양도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고시제 82 호

도시계획특정가구정
비지구변경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66 호(75.5.6)로
변경결정된 특정가구 정비지구들 다
음과 같이 도시계획특정가구정비
지구 변경지적승인 하였던 도시
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
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
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6. 3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특정가구정비지구 변경지적승인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경 (해제)	변경 후
남대문로 3 가지구				
제 1 지구	남대문로 3 가, 남창동 자 일부	2,200	2,200	0
제 2 지구	"	3,000	3,000	0
제 3 지구	남대문 3 가, 회현동 1 가 일부	4,200	4,200	0

별첨 :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24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지정및취소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지정및 자금지원 요령 제

3 조, 제 4 조 및 제 6 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의 지정및
지정취소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 5. .

서울특별시장

1. 지정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75수출목표액	
	한이직물공업사	이시형	성동구성수2가 309-135	아크릴인크원단 데리아스	1,060,000	
2. 지정취소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취소사유	
557	태일기업주식회사	박종태	성북구 종암동16-2	직업용장갑, 운동구	폐업	
706	한국교여진흥(주)	이춘백	마포구 신수동421	진유공예	무단건출 폐업	
710	경남기업사(주)	정원성	마포구 용감동6	진유공예	폐업	
711	동양수출산업사	이형철	마포구 합정동356-4	얼범	행정지시 불이행	
716	근산산업주식회사	홍원표	마포구 도화동172	피복	대기업전환	
719	세진실업	최상운	마포구 노고산동109-4	진구	소재지불명	
728	산업	이학수	마포구 합정동414-3	가발	"	
1202	한국모피공업(주)	이대경	성동구 거여동178-13	각종모피	"	

<p>◎서울특별시공고제 125 호</p> <p>도시계획사업(학교)완료공고</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135 호(74. 9.16)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학교)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제 1 항 및 동법 제 46 조 제 3 항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은평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p>	<p>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5. 6. 3</p> <p>서울특별시장</p> <p>가. 사업집행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불광동 73-1 부근</p> <p>나. 사업명: 도시계획사업(학교종합시설)</p> <p>다. 사업시행면적: 11,300㎡</p> <p>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교육감</p> <p>마. 사업기간: 1974.9.20. - 1975.1.15</p> <p>바. 준공도면: 준공도면생략</p>
---	---

◎서울특별시공고제 127 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천호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계획
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와제 55 조및 동법제 33 조의
규정이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2. 환지계획변경초서및 도면은 서울
특별시도시계획국 구획정리 2 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게 한다.
3.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서류송달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5. 6. 4

서울특별시장

-공람개요-

- 1) 사업명 : 천호토지구획정리사업
- 2) 변경지역 : 서울특별시성동구잠실동
천호동, 명일동, 문촌동,
성내동 일부
- 3) 변경필적수 : 26 필지
- 4) 변경 초서및 도면 : 별첨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130 호

암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공 랑 공 고

1. 건설부공고제 57 호 (75.5.9) 도
암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을 득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33 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서 공고일로부터 14 일
간 관계도서를 공람하고 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구획정리 2 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3. 위 공람공고에 대한 통지문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될 것
이나 미수령된 토지소유자및 이해
관계인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5. 6. 5
서울특별시장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서울특별시암사 토지구획정리
사업
- 나. 사업시행지구 : 성동구천호동, 암사동
각일부
- 다. 시행면적 : 513,371 평
- 라. 시행기간 : 75. . .(인가일)- 78.12.31

◎도 공 고 제 150 호

청사 이전 공고

관하 미아제 4 동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신축이전하였기 공고함.

1975. 6 . .

도봉구청장 김 태 수

다 음

- 1. 전소재지 : 서울특별시도봉구미아동 67-1
- 2. 이전장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 44
- 3. 이전일자 : 1975.6.1

예 규

서울특별시 가정외래식장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서울특별시예규제 293 호

서울특별시 가정외래식장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가정외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 7 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처분의 규정) 법제 7 조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은 별포의 기준에 의한다.

제 3 조 (증거에 의한 처분) 전조의 기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업주 또는 입주한 대신할 수 있는 자로부터 위판사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처분의 표시)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제 1 호및 제 2 호식시에 의한 표지물 당해업소의 정문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197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서울특별시예규제 265 호 (73년 1월 14일) 가정외래에 관한 법률제 7 조에 의한 처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위 반 사 항		위 반 내 용	관 계 법 령	처 분 내 용			
				1 회	2 회	3 회	4 회
1. 허폐허식 행위금지	1) 화환, 화분 이나 유사한 장식물의진열	법률제 5 조 1항 2 호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허 가 취 소		
2. 시 설 기 준	1) 시설기준위반	법률제 7 조 1항 3 호	"	"	"		
3. 허 가 한 사 항 의 변 경	1) 허가불 받지 아니하고 변경	시행규칙 제 4 조	"	"	"		
4. 영 업 의 양 수 또는 상 속의 신고	1) 10일 지연	" 제 5 조	경 고				
	2) 20일 "	"	영 업 정 지 1 월				
	3) 30일 "	"	허 가 취 소				
5. 휴 업 또는 폐 업의 신고	1) 10일 이전에 신고 하지 아 니 한 때	" 제 6 조	경 고				

위 반 사 항	위 반 내 용	관 계 법 령	치 분 내 용			
			1 회	2 회	3 회	4 회
	2) 신고 10일 지 연	시행규칙 "	영 업 정 지 1월			
	3) 신고 30일 지 연	"	허 가 취 소			
6. 임대료 수수료	승인된 임대료 수수료 이상 받을때	시행규칙 제 8 조	1 월 영업정지	3 월 영업정지	허 가 취 소	
7. 준 수 사 항	1) 허가증의 지 정된 장소에 게시 불이행	" 제 9 조 1 항	경 고	1 월 영업정지	2 월 영업정지	허 가 취 소
	2) 임대료, 수수료 의 지정된 장소 에 게시 불이행	" 제 9 조 2 항	"	2 월 "	3 월 "	6 월 영업정지
	3) 가정의례준칙 의 준수사항 위 반	시행규칙 제 9 조 3 항	"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허 가 취 소

위 반 사 항	위 반 내 용	관계법령	처 분 내 용			
			1 회	2 회	3 회	4 회
	4) 영업소의 경내에서 가정의례 준칙 위반	" 제 9 조 4 항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 가
	5) 영업소의 경내에서 음식물 전대 행위	" 제 9 조 5 항	1 월 영업정지	3 월 영업정지	허 가 취 소	
	6) 영업장소의 분갈 및 종사자의 불친절	" 제 9 조 6 항	경 고	2회부터 1월의영업정지처분		
	7) 관계자의 식당 출입	" 제 9 조 7 항	"	2회부터 1월의영업정지처분		
	8) 영업에 필요한 장부 미비치 관계 공무원의 지도에 비협조	" 제 9 조 8 항	"	1 월 영업정지	2 월 영업정지	허 가 취 소

위 반 사 항	위 반 내 용	관 제 법 령	처 분 내 용			
			1 회	2 회	3 회	4 회
	9) 혼인신고서 용지 사망신 고서용지 미비	시행규칙 제 9 조 9 항	경 고	2 회부터	1 월의 영업 정지 처분	
	10) 업무상 지득 한 개인 비밀 누설	" 제 9 조 10 항	"		"	
	11) 상담원 이외의 자의 상담 상담요원의 번 경신고 불이행	" 제 9 조 11 항	1 월 영업정지	3 월 영업정지	허 가 취 소	
	12) 상대방의 결합을 온폐의사에 반 하는 상담진행	" 제 9 조 12 항	경 고	1 월 영업정지	3 월 영업정지	허 가 취 소
	13) 영업소의 전용 전화중선 또는 부경신고 불 이행	시행규칙 제 9 조 13 항	경 고	1 월 영업정지	3 월 영업정지	허 가 취 소
8. 보 고	1) 운영사항의 보고 불이행	" 제 10 조	"	"	"	3 월 영업정지

<별지>

제 1 호서식

1. 영 업 허 가 취소 업 소 의 의 부 표 서

영 업 허 가 취 소 업 소

업 소 명 ○ ○ ○

위 업 소는 가정의 권익 관한 법률 ○ ○ ○ 제 조

를 위반하였기 영 업 허 가를 취소 하였음

197 . . .

서 울 특 별 시 장

본 계첨물을 파손하는 자는 법에 의하여 엄벌할

30 센티 X 40 센티

내용문안 : 적색

백상지 : 60 g/㎡

<별지>

제 2 호 서식

2. 영 업 정 지 업 소 의 외 부 표 시

영 업 정 지 업 소

업 소 명 ○ ○ ○

위 업 소 는 가 정 의 례 에 관 한 법 률 ○ ○ ○ 제 조
를 위 반 하였 기 영 업 정 지 하였 음

기 간 197 . . . 부 터
197 . . . 까 지

시 울 특 별 지 장

본 계 침 물 을 파 손 하 는 자 는 법 에 의 하 여 엄 벌 함

30 센 티 × 40 센 티

내 용 문 안 : 적 색

백 상 지 : 60 g / m²

사 령

◎ 1975. 5. 30

수 도 국 토목기정 열창호 (시설과장)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5. 6. 2

서대문구 지방토목기과 마도진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1 에 의거 휴직을 명함 (75.5.21-75.7.20까지) 의 약 과 지방약무기과 김상우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5. 6. 3

농 정 과 지방행정사무관 권오목 양정과 식생활개선제장에 보함 언 료 과 지방행정사무관 김일환 양정과 조차제장에 보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 박병욱 행정주사에 임함. 11 호봉을 급함. 양정과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김우영 행정주사에 임함. 6 호봉을 급함. 양정과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 주사보 오종택 행정주사보에 임함. 9 호봉을 급함. 양정과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 홍봉기 행정서기에 임함. 양정과 근무를 명함. 감사담당원실 지방행정주사 홍대형 관악구 근무를 명함 공 원 과 지방행정주사보 최태홍 시민과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행정주사보 이원대 시민과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행정주사보 김태호 공원과 근무를 명함 종 로 구 지방행정주사 유정수 공원과 (남성대) 파견 근무를 명함 도 용 구 지방행정서기 박관수 보 시 보 중구 근무를 명함 사 회 과 지방행정주사보 손성호 새마을지도과 근무를 명함. 시정개발당 지방행정주사 김용구 당 관 실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2 . 3 호 의규정에의거 파면에 처함.

<p>양 정 과 행정주사보 차영찬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제 1 항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양 정 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준호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양 정 과 행정주사보 박용섭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제 1 항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양 정 과 지방행정사무관 이필우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양 정 과 행정주사보 이암우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제 1 항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상 정 과 지방행정사무관 방일호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총 로 구 지방행정서기 박승찬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 1975. 6. 5 영 등포구 지방보건기사 김현동 보 건 소 중구보건소 방역과장 직무대리를 명함.</p>
<p>양 정 과 지방농림기사 홍중선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의 약 과 지방약무기사 박홍진 의약과약무계장 직무대리를 명함.</p>
<p>양 정 과 지방농림기원 서정익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유 희철 지방토목기원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p>
<p>동 대문구 지방농림 기사보 김규태 양정 과 근무를 명함</p>	<p>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구 차법</p>
<p>용 산 구 농림기원 윤상욱 양정 과 근무를 명함</p>	<p>지방토목기원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p>
<p>중구보건소 (방역과장) 지방보건기과 이종화 보건예방과 방역계장에 보함</p>	<p>마포구 근무를 명함 건설부기간도 토목기사보 오주환 토건설사무소</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토목기사보에 입함 4호봉을 급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p>	<p>지방약무지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사무관 (세무과장) 장금학</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이명순 중구 근무를 명함 ... 근무출장소 (세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상익 중구 근무를 명함</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연영순 단속과 지방행정사무관 유병돈 도봉구 근무를 명함 도봉봉구 지방행정사무관 허삼근 (세무과장)</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p>	<p>신인철 용산구 지방행정사무관 장신규 (산업과장)</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p>	<p>오전순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사무관 하영기 (주세과장)</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p>	<p>조제숙 중구보건소 위생과장에 포함 마포구(시 민봉사실장) 지방행정사무관 송인현 동대문보건소 위생과장에 포함</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민응식 용산보건소 지방행정사무관 민응식 (위생과장) 성동보건소 위생과장에 포함 서대문보건소 지방행정사무관 임태승 (위생과장)</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성북보건소 위생과장에 포함</p>

서대문구 지방행정사무관 안석봉
(세무2과장) 도봉보건소 위생과장에 보함.

서대문병원
(서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천웅
서대문보건소 위생과장에 보함.

성북보건소
(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유문호
마포보건소 위생과장에 보함.

성동보건소
(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주열
용산보건소 위생과장에 보함.

도봉보건소
(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성정남
영등포보건소 위생과장에 보함.

영등포보건소
(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장순우
관악구보건소 위생과장에 보함.

관악보건소
(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상의
서대문병원 서무과장에 보함.

중구
(세무2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완희
동대문보건소 민원봉사실장에 보함.

중구보건소
(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정태진
아동병원 서무과장에 보함.

서대문구
(주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수
주택행정과 용지1제장에 보함.

동대문보건소
(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길수
단속과 단속제장에 보함.

용산구
(세무2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수형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중구
(세무2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형수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중로구
(세무1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두만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세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규희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지방행정사무관 전인권
마포구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세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유복
용산구 근무를 명함.

마포보건소
(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규신
용산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세무1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승복
용산구 근무를 명함.

아동병원
(서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응용
은행출장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보건소
민원봉사실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상봉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 1975. 6. 10

중무초소청심사
위원회 행정실 지방행정주사 오세주
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